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5. 3 선고 2021가단11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4377.8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73. 10. 25. 접수 제80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함철환

별지